

변경 사항

1. 변경대상 서류 최초 제출일 : 2024.07.05.

2. 변경 사항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<일반 개요> 내용 중 환매수수료 삭제	- 환매수수료 : <u>90일 이하 환매시 이익금의 70%, 180일 이하 환매시 이익금의 50%, 180일 초과 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 (9호의 경우 90일 이하 환매시 이익금의 70%, 90일 초과 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)</u>	- 환매수수료 : <u>해당사항 없음</u>
(2)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<투자 전략> 내용 중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환매수수료 관련 위험 삭제	<u>이 투자신탁의 특정 수익자 환매에 따라 피투자펀드를 매도할 경우에 피투자펀드에서 성과보수가 발생되어 이 투자신탁 전</u>	<u><삭제></u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나. 특수 위험		<u>체의 가치 및 잔존수익자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에서는 이와 같은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 간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, 이익금 일부에 대해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. 이익금 일부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환매 시 수익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습니다.</u>	
10. 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환매청구시 위험 내용 중에서 환매수수료 관련 내용 삭제	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 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 <u>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.</u>	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 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 <삭제>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가. 매입 (1) 매입 방법	판매회사를 집합투자업 자로 변경	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<u>판매회사</u> 영업시간 중 <u>판매회사 창구에서</u>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<u>다만,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,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.</u>	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<u>집합투자업자</u> 영업시간 중 <u>집합투자업자에게 자투자신탁이</u>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<삭제>
11. 매입,	판매회사를	주)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	주) 기준시점은 <u>이 투자신탁의</u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환매, 전 환 기준 가. 매입 (2) 매입 청구시 적 용되는 기 준가격	집합투자업 자로 변경	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 합니다.	<u>자펀드</u>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 에 의하여 <u>자펀드가 매입 청구 된</u>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 환 기준 가. 매입 (3) 매입 청구의 취 소(정정)	판매회사를 집합투자업 자로 변경	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 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 입청구일의 17시 이전까지만 가 능합니다. 다만, 17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<u>판매회사</u> 의 영업가능 시간까 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.	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 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 입청구일의 17시 이전까지만 가 능합니다. 다만, 17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<u>집합투자업자</u> 의 영업가능 시 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 정이 가능합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 환 기준 나. 환매 (1) 수익 증권의 환 매	판매회사를 집합투자업 자로 변경	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은 <u>판매회사</u> 영업시간 중 <u>판 매회사 창구에서</u> 직접 환매 청 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판매 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 는 경우,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.	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은 <u>집합투자업자</u> 영업시간 중 <u>집합투자업자에게</u> 직접 환매 청 구하실 수 있습니다. <u><삭제></u>
11. 매입, 환매, 전 환 기준 나. 환매 (2) 환매 청구시 적 용되는 기	환매 기준 가격 및 대 금지급 산 정 기준 변 경	<u><추가></u>	<u>A.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13영업일(T+12)에 고시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17영업일 (T+16)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</u> <u>B.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</u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준가격		<u>A. 매월 1일부터 매월 7 일까</u> <u>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7 일(영</u> <u>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</u> <u>업일)로부터 제 13 영업일</u> <u>(D+12)에 공고되는 준가격을</u> <u>적용하여 제 17 영업일(D+16)</u> <u>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</u> <u>대금을 지급 (단, 매월 7 일 17</u> <u>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</u> <u>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</u> <u>당월 8일부터 당월 14일까지</u> <u>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</u> <u>한 것으로 본다.)</u> <u>B. 매월 8일부터 매월 14 일</u> <u>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14 일</u> <u>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</u> <u>영업일)로부터 제 13 영업일</u> <u>(D+12)에 공고되는 준가격을</u> <u>적용하여 제 17 영업일(D+16)</u> <u>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</u> <u>대금을 지급. (단, 매월 14 일</u> <u>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</u> <u>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</u> <u>하여 당월 15일부터 당월 21</u> <u>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</u> <u>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)</u> <u>C. 매월 15일부터 매월 21 일</u>	<u>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</u> <u>14영업일(T+13)에 고시되는 기</u> <u>준가격을 적용하여 18영업일</u> <u>(T+17)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</u> <u>후 환매대금을 지급</u> <u><삭제></u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		<u>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21 일 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3 영업일 (D+1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7 영업일(D+16)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. (단, 매월 21 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 하여 당월 22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)</u> <u>D. 매월 22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말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3 영업일 (D+1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7 영업일(D+16)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. (단, 매월 말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 일부터 익월 7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)</u>	
	판매회사를 집합투자업 자로 변경	주1) <u>판매회사</u>가 해산·허가취소, 업무정지 등의 사유(이하 “해산 등”)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집합투자업자</u>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, <u>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</u> <u>신탁업자에게</u> 직접 청구할	주1) <u>집합투자업자</u>가 해산·허가취소, 업무정지 등의 사유(이하 “해산 등”)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		수 있습니다. 주2)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.	주) 기준시점은 <u>이 투자신탁의 자펀드</u>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<u>자펀드가 매입 청구된</u>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나. 환매 (4) 환매 청구의 취소(정정)	판매회사를 집합투자업 자로 변경	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 시 이전 <u>판매회사</u> 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. 다만, 17 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<u>판매회사</u> 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.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	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 시 이전 <u>집합투자업자</u> 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. 다만, 17 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<u>집합투자업자</u> 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. 기준시점은 <u>이 투자신탁의 자펀드</u>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나. 환매 (5)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	판매회사를 집합투자업 자로 변경	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<u>판매회사</u> 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,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.	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<u>집합투자업자</u> 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,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	판매회사를 집합투자업 자로 변경	(생략)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7 조의 절차에	(생략)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7 조의 절차에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나. 환매 (7) 수익 증권의 환 매연기		따라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 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	따라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 리계획을 수익자 및 이 투자신 탁의 자펀드 판매회사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 환 기준 나. 환매 (8) 집합 증권의 부 분환매		(생략)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 체 없이 수익자, 집합투자재산 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,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	(생략)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 체 없이 수익자, 집합투자재산 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이 투자신탁의 자펀드 판매회사 에 통지하여야 하며, 이 투자신 탁의 자펀드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 야 합니다.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 보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 이트	-	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 이트	-	업데이트
3. 집합투 자기구의 운용실적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 이트	-	업데이트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 자업자에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	-	업데이트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관한 사항 라. 운용 자산 규모	이트		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 에 관한 사항	환매수수료 삭제	(생략) -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 래 "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"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 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<u>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 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의 "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"의 환매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.</u>	(생략) -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 래 "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"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 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<삭제>